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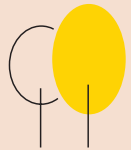
감사와 동행

2024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연간보고서



인사말



안녕하세요. 올 한해 이주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펴며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의 적극 유입을 추진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가사근로자 및 계절노동자 제도 등을 통해 외국 인력 유치 정책을 끊임없이 내어 놓고 있으며, 지방소멸 등을 막기 위한 외국인 기본계획 수립도 끝낸 상태입니다. 다만, 깊이있는 정책적 고민의 부재로 신규 유입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4년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자국민들이 한국 계절노동자로 가는 것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임금체불, 불법브로커, 불법이탈방지 강제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심하여 더 이상의 자국민 피해를 막고자 한 필리핀 정부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감동은 변화하는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고 법률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지원과 법제도 개선활동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항상 댁내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동 구성원 드림.



CONTENTS

01 인사말

02 감동이 지원한 사건

- 감동이 지원한 사례
- 감동에게 온 감사편지

03 나는 이주배경아동에게 어떤 어른이 될까?

-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04 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 경규연 후원자

05 2024년 이주 관련 판례 소개

06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07 감동의 재정보고

08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09 감동 SNS에 놀러오세요

10 감사 인사



감동이 지원한 사례

CASE 1 / 사례 1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지원

J님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J님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남편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 가정의 생계에 무책임하여 J님은 임신 중에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남편은 매일 J님에게 소리 지르며 욕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은 J님이 야근을 하면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J님이 직장 간 사이 하나뿐인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왔습니다. 특히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가르침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온 몸을 때려 멍이 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받아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J님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이주여성 쉼터에 입소하였습니다. 감동은 J님을 대리하여 법원에 이혼, 위자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J님이 위자료를 지급받고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CASE 2 / 사례 2

K님은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로 한국 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창틀 시공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K님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밀린 임금이 약 996만 원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K님은 회사 사장이 부탁하여 그에게 3백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동은 K님을 대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청구하고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또한 K님을 조력해 법원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
지원
사례

- ☒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혼, 양육권 소송
- ☒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아이의 인지청구
- ☒ 난민 재신청 지원
- ☒ 성매매 강요 피해 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여성의 보호일시해제 지원
- ☒ 성매매 강요 피해자 고소대리
- ☒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당한 이주여성 변호

감동에게 온 감사편지

저는 무하요라고 합니다.

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타국 땅에서 힘들고 외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과거 결혼 생활을 했고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그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도 저를 학대했고,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처벌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 모두 많이 힘들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채로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수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였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아버지는 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했고,

법정에서 제가 아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 관련해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여성 지원 기관인 [여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이주민 여성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단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지운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지운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친절히 알려주셨고,

필요한 서류는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직접 정리해주셨습니다.

재판 진행 상황도 계속 전화로 알려주시고,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웠던 시기에,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신 고지운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지운 변호사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을 담아,
무하요

V 감사의 편지 원본

Tashakkurnoma

Men Muhayyo ushbu "Tashakkurnomani" yozishimdan magʻsadon boshiga qiyinchilik kelganda, musofir yurtda oʻyin qolganda, insoflarga ishonchi kamayganida atrofda halikam yaxshi insonlar borligini bilgin va yordam soʻrashdan tortinmasim degan niyyatda yozgʻalman.

Men haris fuqorotiga turmushga chigʻanman sydiha yaxshi bir ogʻil bir qizim bor edi. Turli sabablarga koʻra ajrashdik 4 yil yolgʻiz oʻzim katta qilib boqdim. Yaxshi inson uchral ikkinchi turmush ham qizdim ikkinchi turmushimdan yana ikta ogʻil bor edi. Shu orada katta farzandlarimni otasi ikki bor meni sudga berdi. Biravallari dami bolalarini oʻz vaxtida koʻrib twardi hech qanday nuqamo kelmasti. Ikkinchi turmush qurib hokimlarlar boldim. Bironam ham kuchliq bolib oʻzim bilan oʻzim koʻlgoldim. Bolalarini otasi iyilcha hech qanaga xabarini telon ham qimasdi, bolalarini koʻrganu ham kilmasti. Keyin sud dan xat oldim. Ochib ogʻil shashib goldim. qogʻdim, qattiq xavotirga tushdim. Katta bolalarini otasi meni sudga berishini sababi men bolalarini otasi bilan uchrashishiga qarshilik qilibman.

Shu sababli sudga 2 marotaba berdi. 1-chi sudda 3chi farzandimga xomilador edim xar bir sudga va qonun qayruqlariga soʻxsiz xavotirga tushib koʻp sigʻildim.

1-chi sudda yordam bergan adrakat ham sudga ham meni tushushib va ajrimda qoʻyilgan sud qorori deyarli oʻzgarmasdan goldi.

2-marotaba yana iyilcha bolalarini koʻrganu kilmast va yana meni bolalarini koʻrsatmayabti. Hb sudga berdi. Bu nuqamo 1-chi bor takror lana yolgʻiz uchun koʻprogʻ shuvva tushdim, koʻp ogʻil dan yordam olishini bilmasdan. Dila markazi"ga (가정 센터) murojaat qildim. Allohga nim bor shukr. Dila markazidan ayollarga bishul koʻp xummat koʻrsatadigan "고지은 변호사" niqantlar markazidagi "고지은 변호사" Jochi Un adrakatni tanishtiribti. Bu marotaba borib xushbattashib vaziyatimni tushuntirdim. Xushbattaga borqan kunim qolinda 4-pachagalolim bor edi. bir xil ayol, ona bolonligimni sabablimi 1-chi sudim da biror marotaba sudga qatnashganim yig. 고지은 변호사 xar bir sud oldidan kirakli xujjat va malumotlarni soʻrab tudilar men real va pochta ogʻilni jonatdim. Sud dan keyin ham sud qorori va vaziyatlarini telon ogʻilni xabar buldila.

Sud ham men kutgan va istagandan ham yaxshi natijalar bilan tugadi.

Ogʻir tashvishli kunimda boshga millat odami, begona demasdan dardimni tushumb, xis qilib imkon boricha yordam bergan beminnat xahmat qilgan

고지은 변호사님께 katta minnat dorchi ligimni izxor qilaman. Xummat bilan Muhayyo!



나는 이주배경아동에게 어떤 어른이 될까?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인권 활동가들에겐 이젠 ‘눈물’이 되어 버린 이름, 강태완씨를 아시나요?

강태완씨는 어릴 때 몽골에서 온 ‘이주배경’ 청년이었습니다.

‘이주배경’은 무슨 뜻일까요? 유럽과 OECD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인데요, 유럽에서는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선주민 가정의 자녀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주민인 부모의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거주국에서 출생한 이주민의 자녀는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민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보니 ‘이주배경(Migrant Background)’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배경아동이나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지만, UN아동권리협약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각각 국내출생과 국외출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아동들은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에 발표한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수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12만 6천여 명, 외국인 가정 학생은 3만 2천여 명입니다. 미취학아동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아동은 2~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강태완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가정(한부모)의 국외 출생 자녀로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강태완씨는 6살 때 어머니와 한국에 와서 23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어만 구사할 수 있고 한국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없어 신분을 증빙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핸드폰조차 만들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반면 이주배경 아동 중 대다수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당연히 한국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국적이거나 체류자격 문제와 별개로 뒤늦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소통이 안 돼 자존감이 떨어지고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주배경 아동들은 이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아동부터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까지 각기 다른 배경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이주배경아동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고, 농촌 지역에는 어디에나 이주배경 아동이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이주배경아동과 농촌에 사는 이주배경 아동의 문제 또한 도시와 농촌의 격차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이주배경아동을 이야기할 때 어쩌면 모든 이주배경아동을 아우르는 보편적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주배경 아동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이주배경’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주배경아동이라서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은 국내 출생 이주배경 아동들에게 편견과 차별로 인식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이주배경 아동이 “너 한국말 참 잘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1월21일 전농과 전여농의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이 남태령에서 막히자 모여든 시민들의 발언대에 중국 출신이라고 밝힌 이주배경청년이 발언자로 나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엑스(구 트위터)에서 국제결혼 2세에 관한 게시물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들의 개인사와 경험담, 이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공유됐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지난 2월 이 게시글들을 취합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주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주배경 청년의 ‘다양성’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겪는 이주배경 외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소수자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나는 차별당하지 않았다’는 글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는 ‘차별’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보통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나는 차별당하지 않았다’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별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아직’ 혹은 ‘다행히’ 차별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주민 차별을 내면화해 이주민 차별을 드러낸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이주배경 정체성을 강조하며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올다 학생들에게 차별의 경험을 묻는 인터뷰 요청이 종종 옵니다. 당사자들의 게시글을 분석하면서 ‘차별 경험’을 계속 질문하는 것이 ‘차별적 행위’가 될 수 있겠다는 반성도 했습니다.



이주배경아동과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문제, 교육·청년 문제, 지역차별 문제들을 함께 겪으며 ‘이주배경’의 문제와 얽혀 복합적 어려움 겪습니다. 강태완씨가 미등록 아동으로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낸 뒤 겨우 체류자격을 얻은 지, 몇 달 만인 지난해 11월 연구원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주배경’이나 ‘체류자격’에 주목해 해법을 찾아봐도, 결국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산재사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배경’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로 되 돌아옵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만들 땐 종합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하고,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세울 땐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주배경아동 대책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성하기만 합니다. 18세 이상의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통계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은 모든 아동의 비차별 원칙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언어, 경제적 상태 등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은 생존할 권리와 최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아동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체류자격에 따라 건강권과 사회보장을 차별하는 등 모든 아동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아동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아동’과 관련한 정부의 법 제도에 대해 비판할 내용은 수도 없이 많지만, 이 글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어린이에게는 어른들이 환경이고 세계라는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2020)”을 깨달아야 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을 보도한 <보스턴 글로브>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에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도 온 마을이 책임이다.” ‘이주배경’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당하는 아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대할 때 다음 세대의 시민으로만 유보하지 않고, 현시점의 ‘동료시민’으로 대우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감동의 감동적인 인연

안녕하세요 경규연 후원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규연입니다. 저는 2012년에 법무부에서 취약계층에게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2019년부터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경규연 후원자님

후원자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변호사로서 주로 일하시는 분야가 궁금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민사 사건도 포함하여 송무, 자문, 법교육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교육활동침해 사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께서서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행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도 있으신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의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강화되어 아쉬움을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수사관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연락만 받아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다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보람찬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주세요.

회사에서 여러 명의 상사에게 강제추행 등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기억에 납니다.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여 피해자 증인신문도 여러 차례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결국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했을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Q 감동을 알게 된 계기 및 후원을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2010년에 검찰 실무수습을 하면서 고지운 변호사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취약계층 법률복지 업무를 하면서 이주민 법률구조 관련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감동에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동의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없다면 감동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이미지를 말씀해주세요.

A 감동에서 보내주신 감사카드와 이주민분들이 직접 만든 기념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다정한 온기 한 스푼 덕분에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동 카드 문구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같이 감동받고 있습니다.

Q 감동은 최근 감동이 지원한 이주민들께서 주신 다과를 먹으며 여행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후원자님께서는 여행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신가요?

A 여행 계획은 아직 없지만 어디로든 떠나고 싶습니다. 최근에 ‘꼭꼭 속았수다’ 드라마를 봤더니 제주도 가고 싶고, 작년에 다녀왔던 일본도 다시 가고 싶습니다. 휴양 모드로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싶네요.

Q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감동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 우리 감동 구성원분들이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 깊이 감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주 관련 판례 소개

I. 소개하며

감동이 2021년 이주인권 이슈로 다뤘던 외국인보호소 새우껍기 가혹행위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건은 2021년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이주민 A씨가 체류기간을 연장 미비를 원인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보호조치)된 후 보호소 측에서 A씨의 외부병원 진료를 막는 등 보호소 측과 마찰을 겪은 과정에서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이주민 A씨를 새우껍기 자세로 격리시키고 위법한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는 등 사실상 고문에 해당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껍기’를 두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으며, 이후 법무부 역시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주민 A씨는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2024년 5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피해자인 이주민 A씨에게 1,000만 원과 지연이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아래에 이 사건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II. 2024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가단5379759 판결

[손해배상(국)]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202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 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 난민 신청을 하면서 체류자격이 난민신청 체류자격(G-1)으로 변경되었다가 ■■■■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 경기 이천경찰서에 체포되어 ■■■■부터 보호 일시해제된 ■■■■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화성외국인보호소(이하, ‘피고 기관’이라 한다)에서 보호조치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기관에 보호되었던 기간 중 2021년도에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제1항에 의하여 18회의 특별계호 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계호개시 및 종료일시	계호사유의 요지	비고
1	3.23. 12:49 – 3.25. 12:49	소란행위, 업무방해, 직원모욕(욕설, 얼굴 침 뺨음)	
2	3.31. 10:10 – 4.2. 10:10	직원 폭행 및 욕설 등	
3	4.5. 21:41 – 4.7. 21:41	난동, 직원 욕설	
4	4.9. 08:57 – 4.11. 08:57	난동, 직원 모욕(욕설, 얼굴 침 뺨음)	
5	5.6. 19:59 – 5.11. 19:59	특별계호 중인 외국인을 향해 고성을 질러 다른 보호외국인의 휴식 방해,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 정수기와 식탁, 공중전화 등 기물을 파손하고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집단 행동	
6	5.11. 19:59 – 5.12. 19:59	발로 계호실 출입문을 차는 행위를 1시간 이상 계속하고, 취침시간 이후에도 보호실 문을 발로 차고 CCTV를 향해 소리를 질러 다른 보호외국인의 휴식을 방해하고 보호질서 저해	연장
7	5.12. 19:59 – 5.15. 19:59	발과 손으로 계호실 출입문과 화장실 창문을 가격하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 및 침을 뱉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려는 직원의 얼굴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함	연장
8	5.17. 13:25 – 5.19. 13:25	철창을 손과 발로 치며 고성을 지르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보호질서 저해행위	
9	6.2. 08:13 – 6.4. 08:13	고성 및 보호실 문을 발로 차는 행위로 경고장을 1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감시실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위협하고, 보호실 밖으로 침구류를 집어 던짐	

순번	계호개시 및 종료일시	계호사유의 요지	비고
10	6.3. 12:25 - 6.8. 12:25	손에 수건을 감은 채 보호실 유리를 부수고, 수도관 파손, 직원이 유리조각에 의하여 출혈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파손행위를 멈출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같은 위험 행위를 계속하여 자해 위험, 자살 기도 위험이 있음	연장
11	6.8. 12:25 - 6.12. 12:25	본인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른 외국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직원이 코로나 예방 등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하자 음식물과 식기를 집어 던지고, 특별계호실 보호용 벽지를 뜯는 등 보호시설 및 기물 파손	연장
12	7.1. 22:00 - 7.6. 22:00	다른 보호외국인을 선동하여 난동을 부추시고 함께 기물 파손	
13	7.6. 22:00 - 7.10. 09:00	직원에게 욕설, 화장실 가림막을 발로 파손하고, 변기에 수건, 스티로폼을 집어넣어 막히게 하고 CCTV에 물병을 집어던져 파손	연장
14	7.10. 09:30 - 7.12. 09:30	특별계호를 조기해제하고 일반실로 이동하도록 하자 51호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음	
15	7.15. 15:06 - 7.20. 15:06	운동장에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 직원에게 주먹을 들고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발로 5회 가랑 가격하여 폭행	
16	8.24. 14:47 - 8.28. 14:47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	
17	8.28. 14:47 - 8.30. 14:47	특별계호 해제하며 26호로 이동하게 하였으나 특별계호 조치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도 이동을 거부하여 직원의 지시 불이행	연장
18	8.30. 14:47 - 9.1. 13:50	특별계호 해제하며 26호 보호실로 이동하도록 하였으나 이동을 거부하여 직원의 지시를 불이행	연장

다. 원고가 위와 같이 특별계호 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 피고 기관이 특별계호실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사용한 보호장비와 사용방식 등은 아래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번	기간(완전해제시까지)	보호장비	사용방식 등
1	4.6 02:50 - 03:30	수갑	수갑과 발목보호장비(수갑)를 이용하여 사지결박
2	5.10. 18:51 - 20:35	수갑, 포승, 머리보호대 및 케이블타이	포승으로 발목 결박, 수갑으로 손목 결박, 머리보호대와 케이블타이로 머리 결박
3	5.11. 03:05 - 03:45	수갑	손목 결박
4	5.11. 14:50 - 18:02	수갑	손목 결박
5	6.3. 12:10 - 15:47	수갑	손목 결박
6	6.7. 02:00 - 04:10	수갑	손목 결박

순번	기간(완전해제시까지)	보호장비	사용방식 등
7	6.7. 18:30 - 20:00	수갑	손목 결박
8	6.7. 20:36 - 21:35	수갑	뒷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모포, 매트, 옷 없이 취침
9	6.8. 00:11 - 00:20	수갑 및 포승	뒷수갑으로 팔목 결박, 포승으로 발목 결박한 상태에서 뒷수갑과 발목결박을 줄로 연결
10	6.8. 02:10 - 04:10	수갑	손목 결박
11	6.9. 12:57 - 13:07	수갑	손목 결박
12	6.10. 10:39 - 13:35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새우깍기 상태에서 박스테이프로 머리보호장비 고정
13	6.10. 14:41 - 17:05	수갑, 포승	새우깍기 (10분간)
14	7.3. 14:50 - 16:20	수갑 및 포승	포승으로 발목 결박, 수갑으로 손목 결박
15	7.15. 14:50 - 16:40	수갑	손목 결박

라. 원고가 인권단체를 통하여 피고 기관 특별계호실 및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입수한 1매의 캡처 영상(원고가 독방에서 숙침 ‘새우깍기’ 자세로 엎어져 있는 모습)을 첨부하여 언론기관에 제보하였고, JTBC 등 언론기관에서 피고 기관의 입장 및 관련 사진도 전달받아 “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 줄…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깍기’ 가혹행위”라는 제목 등으로 특별계호실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 기관의 입장에 대한 보도를 하였고, 인권단체도 위 캡처 영상이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에 피고 법무부는 2021. 12. 29.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 “보호소”에서 「새우깍기」 고문 “주장에…” 자해 막는 조치 관련 - ‘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관련 사진 16매(원고가 특별계호실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숙침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를 첨부한 별지1 ‘보도설명자료’를 언론기관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 법무부가 언론기관에 관련 사진을 제공하거나 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마. 피고 법무부는 원고와 면담, 관련 단체로부터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내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1. 1.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0 내지 14호증, 갑 19, 20호증, 을 1 내지 6호증, 을 8 내지 13호증, 을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진상조사결과, 21. 3. 23. - 9. 1. 기간 동안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속칭 '새우깡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특별계호 통고서가 사후에 작성된 허위공문서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보호외국인의 진술, 통고서가 모두 특별계호 개시 또는 연장일시에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는 로그기록 등에 비추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한 결과 담당자들의 보호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함께 보호외국인의 자해 또는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가 이번 인권침해 행위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본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보호외국인의 과격한 행동 기물파손,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등에 대응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특별계호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절차 보장 및 실시기간 제한 규정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표 1] 기재와 같이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조치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63일 동안 원고를 불법으로 독방에 구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1불법행위'라 한다), ② [표2] 기재와 같이 15회 이상 보호장비를 동반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위법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위법한 복합사용을 통하여 가혹행위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불법행위'라 한다), ③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3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 이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21,659,400원 + 이 사건 2, 3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18,340,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 1164 판결 등 참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등 참조).

(나) 징벌적 차원에서 특별계호 조치가 행해진 것인지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에 의하면, 피보호자가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보호규칙(2022. 12. 5. 법무부령 제1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호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 자살·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등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기관의 특별계호 조치는 위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 3호증, 을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원고에 관한 진정사건에서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특별계호는 사실 상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 기관이 시설 내에 '위 조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특별계호 또는 경고장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장 2회 발부 시 특별계호되며 개방형 보호등 이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징벌목적으로 특별계호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별계호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위법한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기간)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2023. 8. 1. 법무부령 제1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하면, '청장등은 제1항의 특별계호 신청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계호의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특별계호를 지시 할 수 있다(제3항),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관은 '시'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시기와 종기 사이에 날짜변동이 있더라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1일로 산정함)하여 특별계호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특별계호 기간을 산정할 경우 [표 1] 순번 5, 10, 12, 15번의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일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시행세칙은 출입국관리법, 구 보호규칙의 위임에 따라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 등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모법인 출입국관리법에 특별계호 기간에 관한 정함은 없지만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56조의3 제1항) ③ 특별계호는 신체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속에 준하는 불이익한 처분임으로 계호기간에 관하여는 구속기간 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유추,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④ 더욱이 피고 기관은 검찰, 행정, 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점(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⑤ 구 시행세칙에는 '알'을 기준으로 특별계호 기간을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기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를 기준으로 특별 계호 제도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의 계산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 고에 대하여 기간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것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법령해석 및 적용 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특별계호 사유 미고지 및 의견진술 기회 미보장 여부

원고는, [표 1] 순번 7, 11, 12, 13번의 경우 통고서 출력 로그기록 조차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 1] 순번 2, 13, 14, 17번의 경우 통고서가 없거나 통고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특별계호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보호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격리 보호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하면, '상황실장은 보호외국인이 보호규칙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격리보호와 함께 특별계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식 제44호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계호할 수 있다(제1항),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설명하여 줄 수 있다(제4항)'고 규정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갑 4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개호의 경우 통고서 사유가 기재되지 않거나 통고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2호증의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3, 을 5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특별개호의 신청과 허가 및 통고서 출력은 출입국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 1] 기재의 특별개호에 대한 통고서를 출력한 로그기록이 존재하는 점, 통고서의 원본은 피보호자에 전달되는 것으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달한 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 대한 CCTV 영상에서 특별개호 통고서가 전달되어 원고 옆에 놓여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 점, 특별개호 통고서는 한글 다음에 괄호 안에 영문이 병기되어 있어 영어가 가능한 원고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기관이 특별개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1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상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1993 판결 등 참조).

1) 포승, 수갑, 머리보호장비 등의 복합사용을 통한 사지결박이 가혹행위인지

원고가 특별개호 처분을 당하는 동안 특별개호실에서 [표2] 순번 2기재의 2021. 5. 10.경, 순번 14기재의 같은 해 7. 3.경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등으로 사지가 결박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한편, ① 출입국관리법 56조의4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제4항), 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에 따라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외의 다른 보호장비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구 보호규칙 제43조에서는, '법 제56조의4 제4항에 규정된 보호장비는 청장등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제1항), 보호장비는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승과 수갑은 자살·자해·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하고, 머리보호장비는 제지에 불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게 사용한다(제2항) 보호장비를

채워 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고, 머리보호장비를 채운 보호외국인은 줄 곧 살펴보아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세칙에서는, '포승사용시 유의사항'으로 '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호), 포승을 사용할 때에는 혈액이 통하지 않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제3호). '수갑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보호근무자가 수갑을 사용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의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수갑이 팔목을 압박하지 않도록 팔목 크기보다 5mm정도 크게 채워야 한다(제77조 제1항),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항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3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1.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큰 때, 2. 위력으로 보호근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3. 보호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제2항), '머리보호장비 사용'으로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시간의 범위 내에서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착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착용을 허가할 수 있다(제1항),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호흡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2항),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계호를 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장비(수갑과 포승)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구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는 예상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었던 점, ③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ㄱ) 2021. 5. 10.에는, 원고가 17:25부터 발로 철제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찼고, 18:40 경에는 직원을 향해 창문들을 휘둘렀으며, 18:45경에는 자해하겠다고 직원을 위협하고 발로 직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 기관 직원이 자해 및 직원 폭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발목을 결박하고, 머리보호대를 착용시킨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8:58경 발목결박을 풀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행위를 계속했으며, 재차 포승으로 발목을 결박하자 19:20에는 머리 보호대를 스스로 벗었고, 19:44경에는 발목결박을 풀고 출입문을 차는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ㄴ) 같은 해 7. 3.에는, 원고가 09:54경부터 특별계호실 내 화장실 가림막을 찢서 부수고, 수건과 스티로폼 조각을 변기에 넣는 등 시설훼손 행위를 하였으며 13:47경에는 변기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여 특별계호실을 옮기면서 시설훼손을 막고자 피고 기관 직원이 손목에 수갑을 채웠는데 옮긴 특별계호실에서도 원고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변기와 바닥 하수구를 원고의 옷으로 막고 물내림 레버를 밟아 물이 특별계호실에 흘러 넘치게 하여 피고 기관이 계호기간을 연장하자, 원고는 14:50경 욕을 하고 식판을 파손하려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포승으로 원고의 발목을 결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일시경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장비 사용이 위법한 것인지

피고 기관에서 [표2] 순번 1기재의 2021. 4. 6.경 원고에 대하여 수갑을 발목에 채운 사실, 순번 2기재의 같

은 해 5. 10.경 원고에 대한 결박을 함에 있어 케이블타이를 사용한 사실, 순번 12기재의 같은 해 6. 10.경 원고를 결박함에 있어 박스테이프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있고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갑의 경우 팔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팔을 앞으로 모으게 하거나 뒤로 모으게 하여 채우는 것)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 보호규칙이나 구 시행세칙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일시경 위와 같이 피고 기관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 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고, 이는 그 자체로 피고 기관 직원이 법령해석 및 적용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2021. 6. 7.경 원고가 뒷수갑으로 결박된 상태에서 취침하게 한 것이 가혹행위인지

원고가 위 일시경 모포, 매트, 옷 없이 1시간 가량 취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을 4호 증의 3,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해 6. 7. 20:36경 원고가 방충철망을 뜯으면서 유리조각을 소지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므로 자해방지 등을 위해 피고 기관 직원이 뒷수갑을 채운 사실, 원고는 스스로 옷을 벗고 모포로 학장실 변기를 막아 물이 흘러 넘치게 하였으며 매트리스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계속했던 사실, 이에 피고 기관에서 원고에게 모포, 매트, 옷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 일시경 피고 기관이 침구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가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속칭 '새우깍기'의 경우

[표2] 순번 9기재의 2021. 6. 8.경 및 순번 12, B기재의 같은 해 6. 10.경 피고 기관이 특별계 호실에서 보호장비를 이용하여 원고를 새우깍기 자세로 결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살피건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 등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헌법재판소 2012. 8. 23. 2008헌마430 참조),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 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손상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계구를 사용한 신체의 자유의 추가적 제한 또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과도한 계구사용은 이와 같이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마49). 또 한 출입국관리법은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6조의3 제항).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과 구 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서는 수갑에 대해서만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고, 포승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장비(수갑과 포승)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구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는 예상하고 있지만 보호장비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이나,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속칭 ‘새우깅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일시경 피고 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5회 이상 보호장비 사용을 동반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에게 단 한번도 사용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징벌목적으로 연속적, 반복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대면 계호의무, 기록 의무, 의료자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시행세칙 제73조에서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여 감시하고 보호근무일지 및 보호외국인 기록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제75조에서 ‘청장등은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6조에서 ‘포승은 수갑 사용으로는 도주, 자해, 자살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청장등이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이 때에도 보호외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제1호)’, 제78조에서 ‘보호근무자가 보호외국인에게 머리보호 장비를 착용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선을 떼지 말고 대면 계호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각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갑 9호증, 을 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기관이 작성한 중점관리외국인기록 부에 의하면 ‘2021. 6. 10. 10:33 포승 줄 결속, 11:48 급수재개’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같은 날 12:15까지 관리사항 중 ‘대응방향’란에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기관이 징벌목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이유 설명의무나 대면 계호의무 등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3불법행위에 대하여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인지

1) 관련법리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동의를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인권단체를 통하여 피고 기관 특별계호실 및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한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 입수한 1매의 캡처 영상(원고가 독방에서 속칭 ‘새우깡기’ 자세로 엎어져 있는 모습)를 첨부하여 언론기관에 제보하였고, JTBC 등 언론기관에서 피고 기관의 입장 및 관련 사진도 전달받아 “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손은 뒷수갑, 발엔 포승줄…화성의 국민보호소 ‘새우깡기’ 가혹행위”라는 제목 등으로 특별계호실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 기관의 입장에 대한 보도를 하였으며, 인권단체도 위 캡처 영상이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 이에 피고 법무부는 2021. 12. 29. 기자회견을 열어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 “보호소”에서 「새우깡기」고문 “주장에…” 자해 막는 조치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관련 사진 16매(원고가 특별계호실 등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속칭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를 첨부한 별지1 ‘보도설명자료’를 언론기관에게 배포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사실, 이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갑 6호증, 을 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인권단체는 기자회견문에 원고에 관하여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즉시 보호 되었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를 ‘해당 보호외국인’이라고 칭하고, 입소전 특이행적으로 ‘2020. 10.월 및 2021년 2월 파출소 내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과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2021. 8. 30.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외국인보호 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등을 하여 형사구발조치를

하였다. 보호 장비 사용은 피보호자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 법무부 인권국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잔상조사를 진행중이다'는 요지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법무부의 기자회견의 경위 및 그 내용과 제공 및 공개한 캡처 영상, 인권단체와 언론기관이 원고에 대하여 공개한 정보와 피고 법무부가 공개한 정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무부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한 명예훼손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 법무부가 배포한 별지1 보도자료 중 16매의 캡처 영상(원고가 특별계호실 등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 시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원고의 얼굴에 대하여는 속칭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과 입소전 특이행적으로 '2020. 10.월 및 2021년 2월 파출소 내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부분,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2021. 8. 30.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등을 하였다'는 부분 등의 사실을 피고 법무부가 적시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보도자료의 내용 등은 진실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하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 3160 판결,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3 내지 6호증(가번호 있는 것은 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가 별지1 보도자료 중 16매의 캡처 영상과 같이 외국인보호시설을 파손하거나, 보호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자해를 시도한 사실, 원고가 입소전인 2020. 10.월 및 2021년 2월 파출소 내 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2021. 3. 17.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2021. 8. 30. 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보호소

직원 폭행 및 상해, 인격 모독, 자해 시도 등을 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 부분 중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는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공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법무부의 보도자료 등의 배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정책 및 법무부의 보호외국인 정책의 국내외적인 신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가 보호소에 입소하게 된 경위와 원고의 법규위반 행위 등의 적시는 인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응하여 보호소 입소의 적법성 및 보호소 내에서 특별계호 및 보호장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해당 보호외국인'으로, 법규위반 행위의 장소는 '화성외국인보호소'라고만 적시하여 특정될 위험을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법무부가 작성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그 배포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속칭 '새우깡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위자료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1불법행위에 대하여 200만 원, 이 사건 2불법행위에 대하여 8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200만 원 +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9.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III. 판례의 의미

법원은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인 새우깍기를 당하고 불법 계수에 묶여 있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속칭 새우깍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이고, 해당 구금 외국인을 결박하기 위해 케이블타이, 발목 수갑,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고 보아 결국 보호소 측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인 결박을 위해 사용된 발목 수갑 등 장비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세칙」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사용이며, 총12회에 걸쳐 34일 간 특별계호를 실시하고 속칭 새우깍기 자세를 유지토록 한 점 역시 당연히 가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역시 이 사건을 기점으로 2023년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하고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여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보호제도 중 보호조치(구금) 명령은 강제퇴거 명령에 수반되는 전제조치로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행정적 제재로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반드시 구금조치인 보호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0년~2022년경 까지 코로나19 확산 금지 정책에 따라 그 기간 중 구금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었는데 당시 강제 퇴거명령 집행 역시 별 차질 없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무상 보호명령이 선행되고 있는 관행은 결국 관리의 편의성·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며 구금된 보호 대상자의 구체적 인권 등은 부차적 고려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보호명령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제고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더 나아가 행정적 제재를 받는 보호 외국인에게 형의 집행에 준하는 구금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동은 외국인보호제도 개선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비법륵가 공익인권 프로그램

감동은 이번 여름 서울대학교 공익법륵센터, 서울지방법륵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예비법륵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참여기관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권에 관심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단체에서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감동에는 총 3명의 재학생(이준하님, 이현우님, 임다운님)이 오셔서 실무 수습을 하셨습니다.

실무수습생들은 계절이주노동자 실태 및 법·제도상 쟁점에 관한 강의 수강, 이주노동 관련 영화 시청 및 감독과의 대화, 이주여성·난민 법률 상담 참관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소송 서면을 작성하고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평하는 등 공익변호사의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공익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세 분의 재학생분들과 함께하며 감동도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은 공익법 활동에 정진하고 공익변호사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이준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에 방문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당사자들로부터 폭력 피해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아팠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쉼터에서 피해자들과 다 함께 여러 국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저도 위로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현우

“본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보람찼습니다. 활동 중에는 계절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강연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이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다은

“고등학교 시절 지역아동센터에서 멘토링 봉사를 했는데 그 때 많은 아이들이 이주배경 아동임을 보며 이주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동에서 2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공익법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주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주민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동의 2024년 재정보고

2024년 일반회계 수입

항목	금액
전기 이월금	25,040,000
정기후원금	51,645,000
일시후원금	16,673,000
기타(예금결산이자 등)	17,000

2024년 특별회계 총당금 회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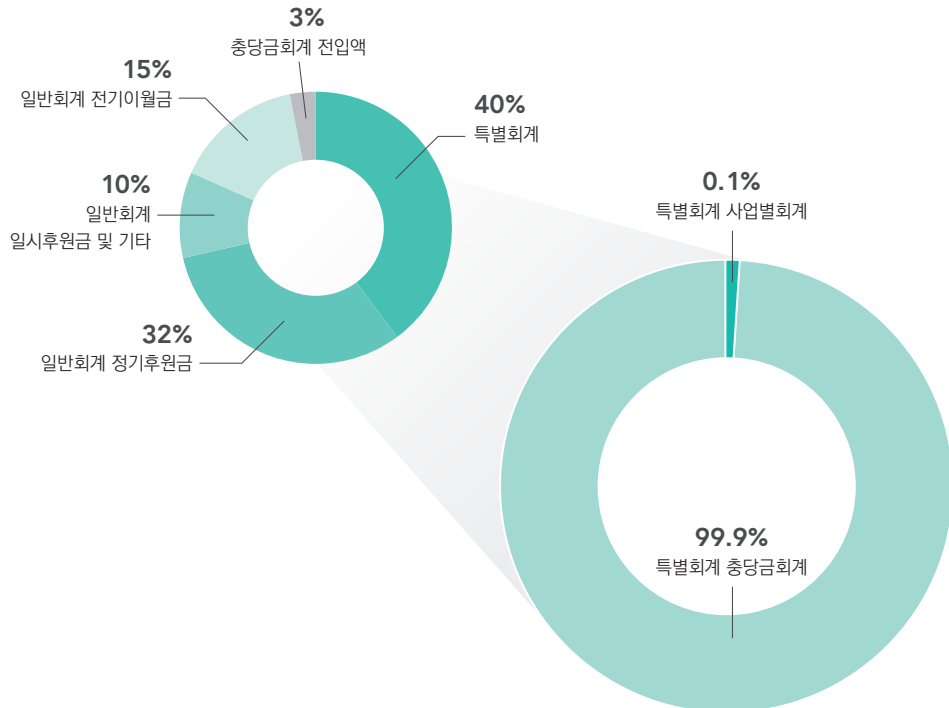
항목	금액
전기 이월금	36,556,000
발전기금	28,090,000
기타(예금결산이자 등)	57,000

2024년 특별회계 사업별 회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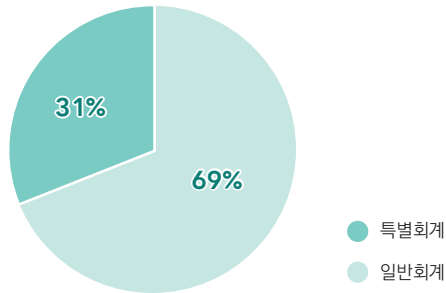
항목	금액
송달료(소송구조)환급	144,000
예금 결산 이자	1,200

2024년 총당금회계 전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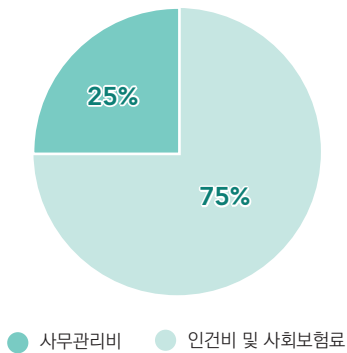
항목	금액
퇴직급여 총당금 전입액	4,800,000



2024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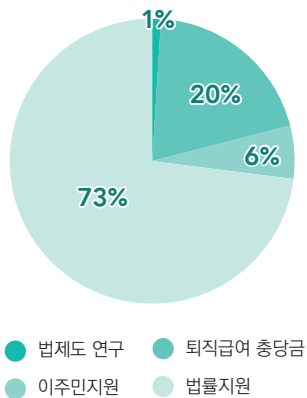


2024년 일반회계 지출



항목	금액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38,785,000
사무관리비	12,927,000
소계	51,712,000

2024년 일반회계 지출



항목	금액
법률지원	17,300,000
이주민지원	1,312,000
법제도 연구	360,000
소계	18,972,000
퇴직급여 총당금 전출액	4,800,000
소계	4,800,000

※ 감사와 동행은 안정적인 재정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 이외의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남은 이월금은 단체 법인화를 위한 준비금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무료사용대차 기간이 만기 될 시 발생할 사무실 보증금의 명목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후원 안내

- ♥ 감동은 지자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 ♥ 감동은 100%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감동은 유료 사건 수임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감동의 후원 회원이 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인 감동 후원 회원은 기부금 영수증 이외에 후원금 3만원당 1시간의 공익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무료변론 및 법제도 개선활동, 감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 ♥ 후원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및 증액 문의는 감동의 이메일(gamdong318@gmail.com)로 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안내

- ♥ 2016년 12월, 감동은 (재)한빛누리와 CMS운영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 (재)한빛누리는 CMS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대신하여 집행할 뿐 감사와 동행의 고유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 CMS 이용 시 후원금은 '한빛누리공익기금' 명의로 출금되지만, 보내주신 후원금 전액은 감동이 받게 됩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재)한빛누리의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후원약정서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및 일시후원 안내

감동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동의 후원금은 이주민 무료변론 및
법제도 개선활동, 감동 센터 운영비 및 이주민지원기금 등에 사용됩니다.

•

정기후원

홈페이지 gamdonglove.org/후원하기-1 에서

정기후원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아래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감동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602-477981(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은

감동의 이메일(gamdong318@gmail.com) 또는 문자 메시지(02 537 5459)로

| 성함/주소/핸드폰번호/이메일/주민등록번호 | 를 알려주세요

감동의 감동적인 후원자님들

정기후원(2024년 12월 31일 기준)

강요한 경규연 권도연 권영실 김가연 김근영 김기천 김대권 김문영 김사강 김서현
 김성훈A 김성훈B 김소이 김수현 김신명 김연주 김예원 김일진 김재학 김정선 김지향
 김택현 김하나 김학자 김현영 김현철 김현화 김형우 남지민 류민희 박대영 박상구
 박은희 박종연 박종운 박종훈 박지현 박 현 배현아 서인석 서지화 섹알마문 신영재
 신현호 안주영 양정숙 양혜우 염형국 윤성주 윤영훈 윤재훈 윤혜영 이경아 이기연
 이동엽 이상민A 이상민B 이용열 이용우 이 일 이정민 이종권 이종훈 이찬희 이학주
 이해진 임세와 임자운 임지영 장영석 장원경 전수연 정교화 정대정 정 인 정재기
 정주환 정지윤 정현진 조아라 조현욱 천지선 최경석 최광해 최정규 최제현 한운장
 허거훈 황필규 patricia Goedde (주)까치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단법인 사랑샘

일시후원(2024년 12월 31일 기준)

강주형 고한나 공현경 김정한 김 진 박윤주 박채연 손혜인 안기옥 장미영 정은재
 조주영 최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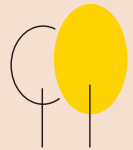
감동 SNS에 놀러오세요

감사와 동행

감동 SNS에 놀러오세요



감사 인사



항상 감동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년 연간보고서를 내면서 그동안의 활동을 결산할 때마다 후원자님들이 함께 계셔주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늘 새롭게 깨닫곤 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동 구성원 모두 후원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마다

후원자님들의 응원과 지원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후원자님들과 더욱 소통하는 감동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도 더 힘찬 활동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523호
gamdong318@gmail.com | gamdonglove.org